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

피 의 자 신 문 조 서 (제0회)

피 의 자:

위의 사람에 대한 (죄명)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.00.00. (조사장소)에서 수사관 000은 수사관 000을 참여하게 한 후,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.

1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1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.
1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1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: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나요

답:

문: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

답:

문: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

답:

이에 수사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.

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(읽어준바),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·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(기명날인)하게 하다.

진 술 자 ㊞

0000.00.00.

수사관 ㅇㅇㅇ ㊞

수사관 ㅇㅇㅇ ㊞